

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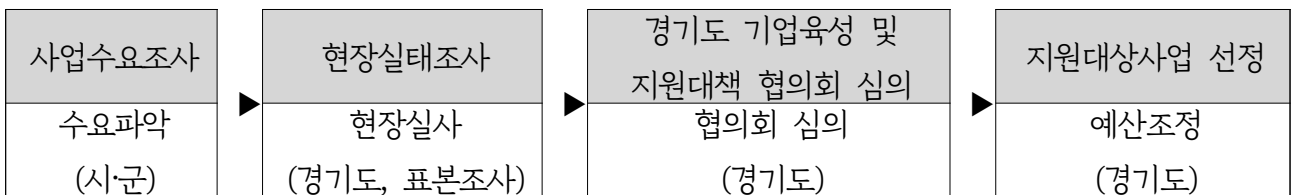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3일
양 주 시 장

I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-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및 제11조
- 사업기간 : 2020년 1월~12월
- 사업내용
 -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 - 근로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
 -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: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
 -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

II. 지원대상 및 기준

- 근로환경 개선사업
 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
 - 지원내용 :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, 휴게공간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건축,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1)
-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

1)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'J-BUS 운영 사업'으로 통합

- 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
-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《 기숙사 건축 지원 내용 》

- 지원대상 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
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
- 제외대상 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- 재원비율 : 기준보조율 적용(도비 30% 시군비 30% 자부담 40%)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
○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- ※ 종업원 수²⁾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○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- 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- 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-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○ 지원요건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
○ 지원우대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³⁾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-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⁴⁾,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○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
2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3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4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
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

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한 사업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□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- 지원내용 : 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,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등
 -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-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
 -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조건)
- 지원요건
 -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 -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 이상 사업
 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- 제외대상
 -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 -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 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한 사업
 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□ 작업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
- 지원내용 : 작업 공간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, LED조명 설치(작업공간만 해당),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)
-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 - ※ 종업원 수⁵⁾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% 하향 조정

5)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(대표자 포함)

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○ 지원한도 :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

※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,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총당 조건)

○ 지원요건

-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
-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
-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○ 지원우대

-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
-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의 사업
-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
-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
-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○ 제외대상

-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
-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- 사업 착수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-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-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
-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

Ⅲ 신청접수

○ 접수기간 : 2019. 7. 23.(화) ~ 8. 14.(수)

○ 접수처 :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및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○ 구비서류

◇ 필수

- 사업계획서(붙임) 1부(현장사진 포함)
- 사업비 산정 견적서 2부(2개 공사업체, 건설업등록증, 전기공사업등록증 등 시공업체 자격 확인서류 첨부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운영기간)
-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(고용인원)

- 자부담확약서 1부
- 시설물유지동의서 1부

◇ 해당시

- 공장등록증명서(공장건축면적500㎡이상)
-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1부(자가가 아닌 경우)
- 여성기업확인서(여성기업)
- 뿌리기업확인서(뿌리기업)
-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서(일자리 우수기업)
-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서(경기도 유망중소기업)
-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(장애인의무고용 준수기업)

IV 향후계획

- 2019년 7월~9월 : 2020년 사업 수요조사
- 2019년 10월 : 2020년 사업 현장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- 2019년 12월 : ‘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’ 선정 심의
- 2020년 1월 : 2020년 사업 사업비 교부

※ 문의 :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(☎ 031-8082-6012)